

**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
대한 수정안 대비표**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⑥ (생 략)</p> <p><u>< 신설 ></u></p> <p>⑦ (생 략)</p>	<p>제14조의 2(과세표준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</u> <u>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</u> <u>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</u> <u>수 있다</u></p> <p>⑧ (개정안의 제⑦항과 같음)</p>